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9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9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52107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1. 6. 17.

판결 선고 2021. 7.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52107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계약 사실과 소외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법정 진술 이전에 제출한 원고의 2020. 11. 18.자 준비서면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에 소외 회사에서 법률 사무를 처리하여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정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형

판사구광현

판사최호식

별지